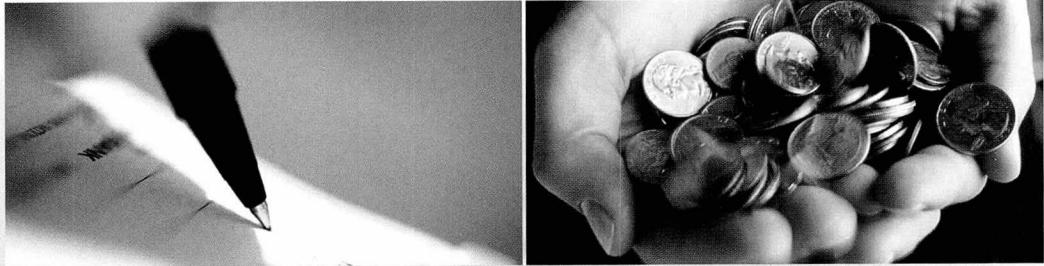


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

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글 | 이호 화인 회계법인 회계사



실 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인한다. 증빙 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살펴보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다. 실지양도가액은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이고, 필요경비는 ①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취득 후 지출한 비용 ③ 양도비용이 포함된다.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와 등록세, 부동산증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건물

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준다.

2)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 시설 등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 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 가능하나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 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

• 취득에 소요된 비용 증빙서류

취득 및 양도 시의 매매계약서(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계약서 첨부)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증빙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기타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비용 증빙서류

양도비용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기타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